



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

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·세출 예산서

부 천 시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|----|
| 1. 예산 총 칙 | 3 |
| 2. 사업 예산 | 15 |
| ○ 사업예산 총 괄 | 17 |
| ○ 수익 적 수 입 | 21 |
| ○ 수익 적 지 출 | 25 |
| - 본 청(하수과) | 27 |
| - 원미구(건설과) | 31 |
| - 소사구(건설과) | 35 |
| 3. 자본 예산 | 41 |
| ○ 자본예산 총 괄 | 43 |
| ○ 자 본 적 수 입 | 47 |
| ○ 자 본 적 지 출 | 51 |
| - 본 청(하수과) | 53 |
| - 소사구(건설과) | 59 |
| 4. 자금운영계획 | 63 |
| ※ 별 첨 | 69 |

1. 예 산 총 칙

1. 예 산 총 칙

제1조(총칙) 2015년 부천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제2조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(하수도사업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) 하 수 전 수 | (상수도 : 97,751 지하수 : 1,024) 98,775천 |
| 나) 연간 하수처리량 | 297,110천m ³ |
| 다) 1일평균 하수처리량 | 814천 m ³ |
| 라) 주요건설개량사업 | |
| ○ 역곡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| 26,153,000천원 |
| ○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| 10,848,600천원 |
| ○ 굴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| 2,651,564천원 |
| ○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| 21,672,000천원 |
| ○ 굴포(역곡)하수처리장 대수선 | 9,422,227천원 |
| ○ 원미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| 1,712,240천원 |
| ○ 소사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| 2,415,660천원 |
| ○ 오정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| 1,913,680천원 |

제3조(수익적 수입 및 지출)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

입

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1 관 | 하수도사업수익 | 48,145,412천 원 |
| 제 1 항 | 영업수익 | 46,201,262천 원 |
| 제 2 항 | 영업외 수익 | 1,944,150천 원 |
| 제 3 항 | 특별이익 | 0천 원 |

지

출

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1 관 | 하수도사업비용 | 29,798,112천 원 |
| 제 1 항 | 영업비용 | 26,520,047천 원 |
| 제 2 항 | 영업외 비용 | 49,000천 원 |
| 제 3 항 | 특별손실 | 29,065천 원 |
| 제 4 항 | 예비비 | 3,200,000천 원 |

제4조(자본적 수입 및 지출)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70,871,506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8,347,300천원 및 이월 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52,524,206천원으로 보전한다.

수

입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1 관 | 자본적 수입 | 27,456,100천 원 |
| 제 1 항 | 투자자산 | 0천 원 |
| 제 2 항 | 고정자산매각수입 | 0천 원 |
| 제 3 항 | 고정부채수입 | 0천 원 |
| 제 4 항 | 자 본 금 | 0천 원 |
| 제 5 항 | 자본잉여금수입 | 27,456,100천 원 |
| 제 6 항 | 기타자본잉여금수입 | 0천 원 |

지

출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1 관 | 자본적지출 | 98,327,606천 원 |
| 제 1 항 | 투자자산 | 0천 원 |
| 제 2 항 | 유형자산 | 27,206,952천 원 |
| 제 3 항 |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| 4,950천 원 |
| 제 4 항 | 비가동설비자산취득 | 16,145,664천 원 |
| 제 5 항 | 유동부채상환 | 0천 원 |
| 제 6 항 | 비유동부채상환 | 342,000천 원 |
| 제 7 항 | 예 비 비 | 54,628,040천 원 |

제5조(계속비)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계속비조서”와 같다)

| 관 | 항 | 사 업 명 | 총 액 | 년 도 | 연 할 액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본적지출 | 가동설비자산 |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| 21,850,000천원 |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| - - 21,850,000천원 |
| 자본적지출 | 유형자산취득 |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 관로 정밀조사용역 | 4,377,000천원 |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| - - 4,377,000천원 |
| 자본적지출 | 비가동설비자산 | 역곡하수처리장증설공사 | 46,525,736천원 |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| - 14,510,000천원 32,015,736천원 |
| 자본적지출 | 비가동설비자산 | 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| 6,242,289천원 |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| - 429,000천원 5,813,289천원 |

제6조(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) 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조서”와 같다)

○ 건설개량비

(단위 : 천원)

| 관 | 항 | 사 업 명 | 총 액 | 년 도 | 연 할 액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자본적지출 | 비가동설비자산취득 | 삼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| 49,500 | 2014년도 | 49,500 |

○ 사고이월

(단위 : 천원)

| 관 | 항 | 사업명 | 총액 | 년도 | 연할액 |
|---|---|------|----|----|-----|
| | | 해당없음 | | | |
| | | | | | |

제7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사항 | 기간 | 한도액 |
|----|----|-----|
| 해 | 당없 | 음 |

제8조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기채목적 | 한도액 | 기채방법 | 이자율 | 상환방법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사업명 :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차입선 : 환경부(환경개선특별회계) 상환재원 : 국비 | 3,420백만원 | 융자금원리금 상환보전 | 3.08% |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|

※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

제9조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0 천원으로 정한다.

제10조(예산전용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- (1) 인 건 비 2,456,031천원
-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18,080천원

제11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·국·도 회계로부터 하수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3,212,000천원이다.

제12조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월이익잉여금 -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-천원 총 -천원 중 -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

- (1) 이월결손보조금 0 천원
- (2) 이익적립금 0 천원
- (3) 감채적립금 0 천원
- (4) 건설개량적립금 0 천원
- (5) 납 부 금 0 천원

제13조(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”와 같다)

| 구 분 | 종 류 | 명 칭 | 수 량(식) | 금 액(천원) |
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해 당 없 음 | | |
| | | | | |

제14조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0 천원으로 정한다.